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WTO 무역협상과 환경

강의계획

KEI 사이버 환경영책대학원 환경영책일반 과정

강의 목적

- 본 강의에서는 최근 세계적으로 무역자유화와 환경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각국이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을 의제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내용을 통해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를 이해하고 고찰해 보고자 함.

주요 강의 내용

- DDA 개요
- 무역과 환경의 연계-환경의제 논의 배경
- DDA 환경의제
- Ex - WTO와 다자간 환경협약(MEA)의 관계
- OECD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 가이드라인
- 평가

Chapter 1. DDA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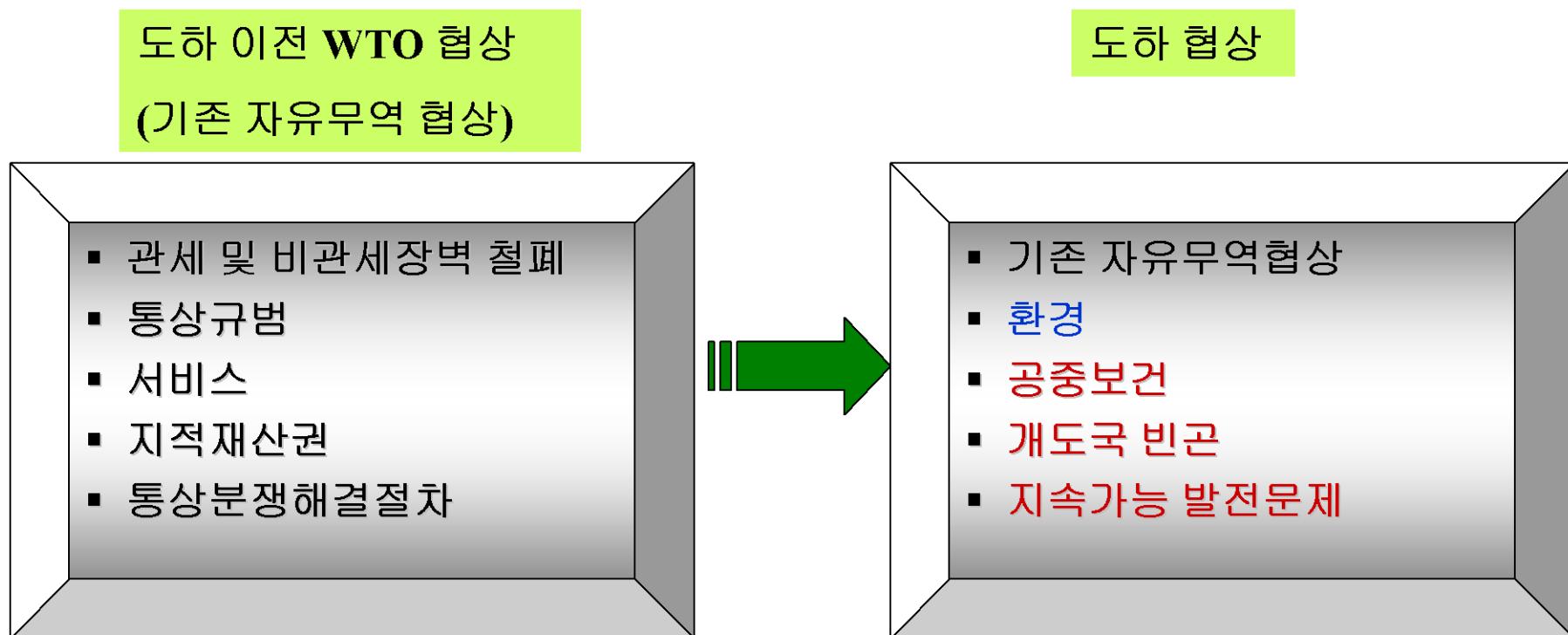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출범배경

▣ 도하 협상 출범배경 및 의의

- UR 협상 성과에도 불구, 농산물과 서비스분야 추가 시장개방 여지 존재
- 공산품 분야에 존재하는 상당수준의 무역장벽
- UR 합의사항 이행 과정의 문제점 해결 및 세계화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 반영을 위한 새로운 무역규범의 필요성
- 자유로운 국제교역 확대가 효율적 부존자원 배분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안으로 재확인
- 또한 경제성장 및 국제무역특화 등으로 인한 특정 지역 생태계의 위협과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지속가능발전기반 위해 요인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특징

□ 도하 협상의 특징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구성-전체

□ 출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WTO 제 4차 각료회의**

□ 도하개발아젠다 구성

각료선언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과 19개 협상의제에 대한 작업계획 및 작업일정 명시
지적재산권 및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검토 및 AIDS, 결핵과 같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공동대처방안 모색
WTO 협정 이행에 관한 결정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UR 당시 합의된 WTO 협정상의 제반 합의사항에 대해 적기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결정문에 개도국 의견을 반영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구성-전문: 원문

『We strongly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obj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as stated in the Preamble to the Marrakesh Agreement. We are convinced that the aims of upholding and safeguarding an **open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acting for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can and must be mutually supportive. We take note of the efforts by members to conduct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s of trade policies on a voluntary basis. We recognize that under WTO rules no country should be prevented from taking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or of the environment** at the levels it considers appropriate, subject to the requirement that they are not applied in a manner which would constitute a means of arbitrary or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between countries where the same conditions prevail, or a disguised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de, and are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 We welcome the WTO's continued cooperation with UNEP and other inter-government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e encourage efforts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WTO and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al organizations, especially in the lead-up to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be held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in September 2002. < para. 6 WTO Ministerial Declarati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구성-전문: 국문요지

- ✓ 현재 세계적인 경제침체 상태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은 WTO가 추구하는 원칙과 목적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를 억제하며 각국 무역정책의 개혁 및 자유화를 계속 추진.
- ✓ 국제무역이 빈곤퇴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전제 하에 다자통상체제로부터 생기는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 선언문에서 채택되는 모든 작업 계획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 ✓ 무역자유화에 있어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도 인정하지만 세계무역규범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서의 WTO의 중요성을 확인.
- ✓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세계경제정책 형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브레튼우즈 기구 및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를 계속.
- ✓ 개방적이고 비차별적인 다자통상체제를 유지하는 것과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 함을 확신.
- ✓ 각국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의 건강, 안전, 환경보호 목적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며, 그러한 조치가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
- ✓ 국제적으로 합의된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싱가폴 각료 선언문 내용을 재확인하고,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작업에 대해 주목.
- ✓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작업이 금번 각료회의에서 마무리됨을 환영하고, 현재 진행중인 28개국의 가입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끝나기를 희망.
- ✓ 모든 회원국의 효과적인 활동 참여 및 WTO의 내부적 투명성 증진을 보장할 공동의 책임을 확인하고, 정보 교류 및 대화의 장 제공을 통해 WTO에 대한 일반대중의 이해도를 제고하도록 노력.
- ✓ 이러한 고려 하에 넓고 균형적인 작업계획을 추진.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1. 농업

-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의 수립이 장기 목표임을 확인
- 협상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3대 협상분야별 협상목표를 아래와 같이 설정
 -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substantial improvement)
 -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를 목표로 한 감축
 -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substantial reduction)
- 개도국 우대는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양허표 작성 및 규범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을 합의
- 비교역적 관심사항(NTC: Non-Trade Concerns)이 협상의 고려사항임을 확인
- 협상방식(modalities) 수립 시한은 2003.3.31., 양허안 제출시한은 5차 각료회의 이전으로 결정
 - 단, 협상종결은 전체 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합치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2. 서비스

-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협상의 진전에 대해 당사국 모두 만족을 표명
-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3.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
- 1차 시장개방 양허*안 요청은 2002.6.30., 양허안은 2003.3.31 까지 제출

*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WTO 서비스 시장개방 협상의 근간이 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포괄적 협정문으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협정의 정의 및 범위 등에 관한 일반적 원칙과 가입국 의무사항 등을 담은 본문(전문을 포함한 6부 29개 조항)과 특정분야에 한정된 규범을 받은 7개 부속서(금융, 해운, 전기통신, 항공운송, 기본통신, 자연인 이동, 최혜국 대우(MFN) 면제) 및 개별회원국의 분야별 양허(commitment)계획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서비스 협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DDA 환경서비스 협상에 대한 강의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것임.

* 양허 (Commitment): 양허와 개방은 비슷한 의미지만 양허에는 개방에는 없는 '구속력'이 포함됨

개방은 말 그대로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지만 양허는 개방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국가간의 약속이라는 의미가 포함됨. 예를 들어 양허관세는 국가간 협상을 통해 관세를 일정 세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약속임.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3. 비 농산물 시장접근

- 첨두관세*, 고관세 및 경사관세* 문제를 포함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 개시
- 협상대상 상품 범위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선협적 제외가 있어서는 안됨.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또는 후진국, LDC-Least Developed Countries)의 이익 고려
- 이를 위하여 LDC들이 협상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할 세부원칙에는 필요한 연구(appropriate studies)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capacity-building measures)을 포함토록 함.

* 첨두관세 (Tariff Peak): 주로 선진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특별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 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제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세율도 높아지는 관세구조임. 즉, 통상적으로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재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낮게 부과하고 완제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품의 가공도가 높을수록 관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말함. 이 경우 수입 투입물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자원수입국의 생산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 반면, 비가공제품과 원료를 수출하는 자원수출국의 가공업에 대한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WTO CTE(무역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철강, 섬유, 피혁류 등에 경사관세가 존재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4. 지적재산권

- 포도주와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통보 및 등록을 위한 다자 체제 설립 협상 마무리
- 지리적 표시 보호를 여타 상품에도 확대하는 문제는 TRIPS 이사회에서 검토
- TRIPs* 협정과 CBD*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에 동의

*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하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음. WTO 모든 회원국에 적용. 30여개 선진국들은 1996년 1월부터 TRIPs를 시행, 개도국은 2000년 1월부터 TRIPs 협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최빈개도국(LDC)은 2006년 이후로 유예.

*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협약은 생물종보호, 희귀유전자보전,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생물종 멸종위기 극복 국제협약임.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5. 무역과 투자

- 국경간 장기 투자 특히 무역확대에 기여할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서비스협정의 접근방식에 기반한 범위 및 정의, 투명성, 비차별, 설립 전 약속에 대한 조항 및 국가간 분쟁해결조항 등
 - 상기 다자규범은 투자국 및 유치국간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정부의 규제책임 및 경제개발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 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무역개발회의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UN 총회의 상설기관임.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6. 무역과 경쟁정책

- 국제무역과 개발에 기여할 경쟁정책에 대한 다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에 대한 개도국의 필요를 인정하며, 이를 위해 UNCTAD를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 그리고 지역 또는 양자 채널을 통해 지원을 제공
- 제5차 각료회의까지 각종 요소의 명확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
 - 투명성 비차별 절차의 공정성 **중핵카르텔*** 규정을 포함한 핵심 원칙, 자발적 협력을 위한 방식(modalities), 능력배양을 통한 개도국 경쟁기관의 점진적 강화 등

* **중핵카르텔**: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중핵카르텔은 카르텔 중 가격고정이나 입찰담합, 생산량 제한배분, 시장분할 등 경쟁 제한성이 큰 공동행위를 일컬음.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7. 정부조달투명성, 8. 무역원활화

- 정부조달 투명성에 관한 다자협정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이 협상은 정부조달 투명성 작업반에서의 진전사항에 기초하고, 개도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
 - 협상은 투명성 분야에만 제한되어야 하며, 각국이 국내 공급품 및 공급자를 선호할 여지를 제한하지 말아야 함.
-
- 상품의 이동 통관을 촉진시킬 필요성 및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제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협상방식에 따라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
 - 5차 각료회의 시 까지 상품이사회는 GATT* 94 협정 제5,8,10조의 유관 분야를 검토, 명확화,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회원국들의 무역원활화 수요 및 우선순위를 파악

*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여 출범한 국제적인 무역협정으로 WTO 출범 전까지 국제 통상 질서를 지배해옴.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9. WTO 규범, 10. 분쟁해결양해 개정

-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의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단, 협정의 기본개념, 원칙, 유효성 및 그 수단, 목적은 유지
 -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역왜곡적 관행을 포함하여 각국이 명확화 또는 개선을 희망하는 조항을 제시
- 동 협상의 맥락에서 수산 보조금 관련 규율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표로 함.
- 지역무역협정에 적용될 WTO 조항을 명확히 하고 개선할 목적의 협상 개시

- 분쟁해결양해* 개정에 대한 협상 개시
- 협상을 통해 2003년 5월 이전에 균형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함.

* WTO의 분쟁해결양해(DSU: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공식명칭은 '분쟁해결을 규율하는 규칙과 절차에 대한 양해'이며 WTO 창설협정의 부속서 2에 포함되어 있음. 동 양해는 모두 27개 조문과 4개 세부 부속서(Appendix)로 구성되어 있음. 1조는 적용범위, 2조는 이행기구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 3조는 일반규정, 그리고 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규명하고 있음. 세부부속서 1에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협정의 목록을 마련하고, 부속서 2는 대상협정에 포함되는 특별 또는 추가 규칙 및 절차, 부속서 3은 작업절차, 그리고 부속서 4는 전문가 검토그룹에 관하여 규정함.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11. 무역과 환경

-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과를 예단하지 않으면서 아래 분야에 대한 협상을 개시
 - WTO 기존 규범과 ME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 MEA 사무국들과 WTO 위원회간 정기적 정보 교환 및 옵서버(Observer) 자격 절차
 - 환경관련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
- 수산 보조금이 규범 분야 협상의 일부임에 유의
- 무역환경위원회(CTE: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는 현재 소관 범위 내의 모든 의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되, 특히 다음에 주목
 - 환경조치의 시장접근에 대한 효과, 무역규제 및 왜곡을 철폐 또는 삭감하여 무역·환경 개발에 도움이 되는 상황
 - TRIPS협정의 관련 규정
 - 환경 목적의 라벨링 요건
- 상기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의 파악을 포함하고, CTE는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를 하며, 협상 필요성을 포함한 장래 작업에 관한 권고를 제출
- 동 작업 및 para. 31의 협상 결과는 다자무역체제의 비차별성과 조화되어야 하며, 기존 WTO 협정상 회원국의 권리 의무를 추가 또는 감소하지 말아야 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의 필요를 감안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 12. 전자상거래, 13. 소규모 경제, 14. 무역, 부채, 금융

- 제네바 각료선언 이후 일반이사회 및 다른 기구에서 행해진 작업에 주목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작업계획을 계속함.
 - 일반이사회는 작업계획을 다룰 가장 적합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서 제출
 - 5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유예 관행 연장
-
- 일반이사회 감독 하에 소규모 경제국(small economies)을 다자무역체제에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 계획 수립
-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 부채, 금융 간의 관계를 검토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 15. 무역과 기술이전, 16.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17. 최빈개도국

- 일반이사회에서 무역과 기술이전의 관계 및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가능한 권고 방안을 검토하고, 이 문제를 다룰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여 5차 각료회의에 보고
- 기술협력대장국이 WTO 규범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협정장의 권리 및 의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계획이 고안되어야 함. 또한 제네바에 대표부가 없는 국가를 우선시하여 기술지원이 행해져야 하며, 예산행정위원회가 보다 장기적인 기금조성 계획을 작성하여, 올해 12월 일반이사회가 그 계획을 채택하도록 함.
- 최빈개도국 (LDC)의 무역체제 통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최빈개도국을 위한 작업계획 고안 시 2001년 5월 제3차 UN 최빈개도국 회의에서 채택된 브뤼셀 선언을 고려해야 함. 또한 최빈개도국을 위한 통합계획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기반한 신탁기금의 확대를 위해 노력함.
- LDC 산품(產品)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목표에 대한 약속을 확인.

DDA (Doha Development Agenda)/ 세부협상

의제 - 18. 개도국 우대(S&D), 19.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 S&D 조항을 보다 정확. 유효하게 운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관련 조항을 검토
- 이행 관련 결정문 내용 중 S&D 작업계획 부분을 승인

- 협상일정
 - 협상종료시점 : 2005.1.1
 - 제5차 각료회의는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결정을 채택
 - 모든 분야의 협상종료시 특별 각료회의에서 동 결과를 채택
-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 무역협상위원회(TNC) 설치
 - 1차 회의 개최: 2002.1.31 이전
- 협상방식 : 협상 부문간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한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 (DSU 개정은 예외)
 - 전체협상을 하나의 package로 처리
 - 그러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 시행 가능
- 협상 참가국 :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
- 무역개발위원회와 무역환경위원회는 협상의 개발측면과 환경측면을 검토.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경과

- 2001년 11월 출범, 2002년 2월 7개 협상 기구 설치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규범, 환경, 자재권, 분쟁해결), 개발,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은 WTO 기준 산하기구에서 논의
 - ⇒ 2002년 3월 분야별 논의 개시
 - ⇒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칸쿤) 협상 결렬-쟁점 협상세부원칙(modalities) 합의 결렬
 - ⇒ 2004년 8월 DDA 협상 기본골격에 관한 합의문 채택 2005년 12월 제6차 각료회의 까지 협상 연장합의
 - ⇒ 2005년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제6차) 쟁점사항 협상 연장합의 - 서비스협상방식 합의, 복수적 양허방식으로 협상 진행
 - ⇒ 2006년 6월말 30여개 WTO 회원국이 참여한 소규모 각료회의 합의 무산
 - ⇒ 2007년 7월 G6 정상회의 시 농업분야 주요 쟁점 타결에 실패 DDA 협상 일시 중단 (2007. 7. 24), 농업 및 비농산물 그룹 의장의 분야별 협상 세부원칙 초안 배포.
 - ⇒ 2008년 2월 세부원칙 수정안 배포, WTO 사무총장의 협상 타결전망 발표. 세부협상 진행 중